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3
----------	----

2018년 9월 10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8월 16일, 황인구 의원 외 29명

2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1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
(2018년 9월 10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황인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폭염,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재나 붕괴,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,
- 학교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법정 시수 이외에 교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제8호).
-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시간을 법정 시수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6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6일 황인구 의원 외 29명의 의원에게 의 해 의안번호 제93호로 발의되어 201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화재를 비롯하여 폭발, 붕괴, 각종 테러사고 등의 사회재난과 홍수, 태풍, 지진, 대설, 한파 등의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교육안전의 범위 중 재난안전을 규정하고,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육시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재난안전교육의 법령체계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

- 현행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¹⁾ 「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3

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학교안전교육의 실시)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(이하 "안전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,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
2.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

조는2) 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장에게 화재 등 재난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 제5조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하면서도 상위법령과 달리 화재, 폭발, 붕괴, 홍수, 태풍, 지진, 대설, 한파 등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왔습니다.

○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학교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였는바, 개정취지 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.

-
3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
 4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
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

6.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

② ~ ④ (생략)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2조(학교안전교육의 실시) ① 학교의 장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횟수·교육시간·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

1.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
2.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
3.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
4.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
5. 화재·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
6.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
7.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
8.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

② ~ ⑤ (생략)

2) 「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
제3조(학생 안전교육)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【별표 1】 과 【별표 2】 에 따라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「아동복지법」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·통합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나. 조문별 검토

- 먼저 안 제5조제8호는 교육안전의 범위에 교육활동 중의 홍수·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·붕괴 등 사회재난을 추가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상위 법령과 교육부 ‘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’에 따른 ‘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’(교육부, 2016.3), 그리고 ‘2018년 학교 안전교육 계획’(서울특별시교육청, 2018.4)상에 제시된 재난안전교육을 조례상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.

또한 안 제11조제6항은 법령으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추가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.

- 이러한 사항들은 상위법령에 따라 하위 규범체계인 조례를 정비하여 규범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,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³⁾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정책·안전기획관-8093, 2018.8.24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.

3)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8년 안전교육 관련 예산 내역은 [별첨] 참고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재난안전 : 교육활동 중의 홍수·지진·폭염 및 폭설·황사·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·붕괴·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

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재난안전 : 교육활동 중의 홍수·지진·폭염 및 폭설·황사·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·붕괴·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</u></p>
<p>제11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제11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